

교내서점 위탁운영관리 특수조건

제1조(적용범위) 본 조건은 상명대학교(서울) 교내서점 운영사업자가 함께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한다.

제2조(운영장소) 교내서점의 운영장소는 본교에서 지정하는 장소(서울캠퍼스 미래백년관 지하1층)에 한하며, 본교에서 지정하는 장소를 이탈 또는 기피할 수 없다.

제3조(기본사항)

- ① 계약상대자는 상명대학교(서울) 시설물 관리방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관리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② 계약상대자는 교내서점이 교직원 및 학생들의 후생복지시설임을 감안하여 신의에 바탕을 둔 물품을 판매하여야 한다.

제4조(임대료) 계약상대자는 임대보증금 없이 계약금액을 2회로 분할하여 본교가 고지한 납부기한까지 지정 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제세공과금 및 공공요금) 계약상대자는 위탁운영에 관련되어 부과되는 일체의 제세공과금 및 공공요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물 설치 및 투자)

- ① 계약상대자는 서적 비치 및 진열용 서가, 문구류 진열장 등 비품 및 서점 운영에 필요한 시설물 일체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계약상대자는 기존 업체(서점)의 비품 및 시설물을 변경하여 사용시 본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련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7조(부대시설의 설치)

- ① 계약상대자는 서점 운영에 필요한 광고판, 기타물품 등의 설치 시에는 본교의 승인 후 설치하여야 하며, 계약종료 또는 해지 시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고, 원상 복구할 수 없는 영구 시설물에 대하여는 기부채납 또는 자진철거 한다.
- ② 별도의 물품보관장소는 없다.

제8조(서점의 운영)

- ① 계약상대자는 본교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교재를 상시 구비하고 교재 이외의 참고서적류와 그 외 교양서적류를 다양하게 비치하여야 한다.
- ② 계약상대자는 본교 교직원 및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문구류를 다양하게 비치하여야 한다.
- ③ 계약상대자는 서적을 다음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구 분	전공서적	교양 및 일반서적	수험서
할인율	정가판매	10%	10%

④ 계약상대자는 서점운영을 위한 관리인 1인을 상주시켜야 한다.

⑤ 서점의 운영시간은 학생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본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의견수렴 및 개선) 계약상대자는 교직원 및 학생의 의견을 수시로 파악하여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는데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준수사항) 계약상대자는 상기 시설을 위탁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본교의 일방적인 위탁계약 해지 요구에 이의 없이 응해야 한다.

1.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본교와 계약한 내용을 불이행하거나 계약된 내용 이외의 상행위를 한 경우
3. 계약상대자의 불공정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서점이 법원에 압류된 경우
4. 계약상대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임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계약상대자의 부실운영으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이 접수되어 본교의 관련기구(학생경력개발처)에서 심의를 통한 시정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회 이상 불응한 경우

제11조(양도금지) 계약상대자는 위탁시설의 관리·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매매 포함)할 수 없으며, 담보 제공 또는 기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재산의 보존) 계약상대자는 관리자로서 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제13조(유익비 상환청구권)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기타 해약의 사유가 발생하여 본 계약이 해지 또는 파기될 경우 본교에게 유익비가 발생하더라도 계약상대자는 이를 청구하지 아니하며, 어떠한 명목으로도 권리금 등을 주장할 수 없다.

제14조(계약기간 종료 후 시설물 철수)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종료 또는 계약해지 시 30일 이내에 매장의 모든 설치물품 및 취급품목을 철수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 하지 않을 경우 본교에서 강제 철수하여도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5조(기타)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거나, 계약사무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결정한다.